



첨부서류	<p>1. 신고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</li><li>나. 폐기물 수집·운반 계획서(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</li><li>다.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</li><li>라.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</li><li>마.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(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</li><li>바.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</li><li>사. 폐기물을 성토재·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(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li></ul> <p>2. 변경신고의 경우: 신고증명서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**처리절차**

